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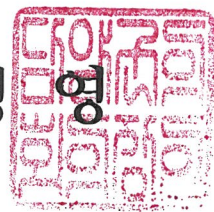
담양군의회규칙 제19호

공 포 문

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11월 10일

담양군의회 의장 장 명



붙임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
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제안이유

- 집행기관 행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대집행기관 질문(군정질문)의 방식, 발언시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,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의회를 구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군정질문 방식에 관한 사항(안 제66조의2제2항)

- ◆ 본질문 : 일괄질문 · 일괄답변
- ◆ 보충질문 : 1문 1답(본질문한 의원이 본질문 범위에서 가능)

나. 군정질문 시간에 관한 사항(안 제66조의2제3항)

- ◆ 본질문 :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20분 초과 불가
- ◆ 보충질문 :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초과 불가

다. 군정질문 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66조의2제4항)

- ◆ 의장은 질문 요지서를 군정질문 120시간 전까지 군수에서 송부해야 하고, 군수는 답변 요지서를 군정질문 48시간 전까지 의장에서 제출해야 함

3. 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의2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군정질문은 일괄질문·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1문 1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한다.

제66조의2제2항 후단 중 “의원이 원할경우 일문일답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의장”을 “보충질문은 본질문한 의원이 의장”으로, “본 질문”을 “본질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군정질문의 의원별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본질문 20분,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에 대한 추가시간을 10분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.

④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정 질문 요지서를 미리 접수하여 질문내용이 의원 간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한 후, 군정질문 120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군정질문 48시간 전까지 이에 대한 답변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6조의2(군정에 관한 질문) ① (생략)	제66조의2(군정에 관한 질문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군정질문은 일괄질문·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며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. 다만 의원이 원할 경우 일문일답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 를 받아 본 질문의 범위에서 질 문한다.</u>	② <u>군정질문은 일괄질문·일괄 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1문 1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한다. 다 만 보충질문은 본질문한 의원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한다.</u>
③ <u>군정질문을 할 때에의 발언 시간은 제33조를 준용한다.</u>	③ <u>군정질문의 의원별 질문시간 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본질문 20분,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에 대한 추가시간을 10 분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.</u>
④ <u>의장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의 질문요지서(별지 제1호서식)를 미리 접수하여 질 문내용이 질문의원간에 상호 중 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한 후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 야 한다.</u>	④ <u>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 정 질문 요지서를 미리 접수하 여 질문내용이 의원 간 상호 중 복되지 않도록 조율한 후, 늦어 도 군정질문 120시간 전까지 군 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군정질문 48시간 전까지 이에 대한 답변 요지서 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